

##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실시

(기간 : 2011. 11. 13. ~ 2012. 2. 11.)

### ■ 신고 · 신청대상

- 국외부재자 신고 :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
-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: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, 국내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

### ■ 신고 · 신청방법

#### ○ 국외부재자 신고

##### ▪ 신고방법

- ① 외국에 있는 사람은 공관에 신고서 제출(우편신고 가능)
- ② 국내에 있는 사람은 관할(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) 구청장 · 시장 · 군수에게 신고서 제출(우편신고 가능)

##### ▪ 첨부서류 : 여권 사본

#### ○ 재외선거인 등록신청

- 신청방법 : 반드시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(어느 공관이나 가능, 우편신청 불가)

##### ▪ 첨부서류

- ① 여권 사본
- ② 비자 · 영주권증명서 ·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투표관리관(공관장)이 국적확인을 위해 공고한 서류의 사본

※ 첨부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음.

- ▶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은 신고나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.
- ▶ 신고·신청서는 공관 비치 또는 재외선거홈페이지(ok.nec.go.kr)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깨끗한 재외선거 글로벌 **대한민국**의 얼굴입니다



**재외선거**  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[427-727]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(중앙동 2-3)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
Tel. 82-2-503-0648 Fax. 82-2-507-4352